

2021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3258호, 제3259호
- 다. 제출일자 : 2021. 5. 30.
- 라. 회부일자 : 2021. 6. 3.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1	7,774	7,774	13,631	10,402	143	3,086	76.3

- 세입예산현액은 77억 74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36억 3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04억 2백만원을 수납하고, 143백만원은 불납결손하여 30억 8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률은 징수 결정액 대비 76.3%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1	108,301	21,752	6,776	768 (-768)	20 (-20)	316 (-316)	136,829	113,931	16,696	2,553	14,143	45	6,157 (4.5%)

- 예산액 1,083억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7억 52백만원, 예비비 사용 67억 7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68억 29백만원으로, 이 중 83.3%인 1,139억 31백만원은 지출하고 12.2%인 166억 9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3%인 45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61억 5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사용

- 예산 전용 사용은 1건에 20백만원으로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2천만원임.

○ 변경 사용

- 예산 변경 사용은 5건에 768백만원으로
- 빗물관리시설 확충 3백만원
-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66백만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 3억 95백만원
-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1억 96백만원
-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1억 8백만원임.

○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사용은 1건에 67억 76백만원으로
- 무상양도 부당이득금반환소송 67억 76백만원임.

○ 이체

- 예산이체는 3건에 316백만원으로
- 수질오염원 관리(사무관리비) 5백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기타보상금) 22백만원
-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2억 89백만원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25억 5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368억 29백만원 대비 1.9%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41억 4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4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368억 29백만원 대비 0.03%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61억 5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368억 29백만원 대비 4.5%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1	136,829	6,157	4.5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9억 71백만원
- 보조금 정산잔액 : 8천 7백만원
- 낙찰차액 : 9억 87백만원
- 지출잔액 : 21억 12백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1	13,000	13,000	10,000	10,000	-	-	100.0

- 예산현액 130억원 대비 76.9%인 10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액 지방채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1	56,876	5,389	-	135 (-135)	-	-	62,265	51,925	9,549	2,500	7,049	-	791 (1.3%)

- 예산액 568억 7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3억 8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22억 65백만원으로, 이 중 83.4%인 519억 25백만원은 지출하고 15.3%인 95억 4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7억 9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3건에 1억 35백만원으로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시설비를 감리비로 7천 8백만원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7백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25억 원으로 예산현액은 622억 65백만원 대비 4.0%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70억 4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3%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 없음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7억 91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622억 65백만원 대비 1.3%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1	62,265	791	1.3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 7억 91백만원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1	33,889	33,967	31,940	31,940	-	-	100.0

- 세입 예산현액은 339억 67백만원으로 319억 4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19억 4천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1	33,889	78	-	80 (-80)	160 (-160)	-	33,967	29,951	-	-	-	1,468	2,548 (7.5%)

- 예산액 338억 8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천 8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39억 67백만원으로, 이 중 88.2%인 299억 51백만원은 지출하고, 4.3%인 14억 68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25억 4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예산전용 사용은 1건 1억 6천만원으로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1억 6천만원임.

○ 변경

- 예산변경 사용은 2건 8천만원으로
- 잠실상수원 관리 1천만원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7천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해당 없음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68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39억 67백만원 대비 4.3%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5억 4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339억 67백만원 대비 7.5%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1	33,967	2,548	7.5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0억 2천만원
- 지출잔액 : 2억 5천만원
- 예비비 : 2억 78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1	7,774	7,774	13,631	10,402	143	3,086	-	3,086	76.3
2020	13,349	13,349	16,375	13,027	43	3,305	-	3,305	79.6
2019	14,943	14,943	23,190	19,666	142	3,382	-	3,382	84.8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77억 74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36억 3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04억 2백만원을 수납하고, 143백만원은 불납결손하여 30억 8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76.3%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21~27)

- 금회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75.4%로 총 58억 58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0회계연도 122.7%(30억 26백만원)와 비교할 때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다소 낮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일부 세입 중 예산액 대비 징결정액의 차가 과다한 항목들은 [표 1]과 같음.

[표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세외수입					
하천사용료	1,811	1,734	1,701	-77	· 공공사업 개발로 인한 행정재산 면적 감소, 코로나19 대응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수입 감소
그외수입	819	3,128	3,128	2,309	· 소송 공탁금 회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수입 증가
지난연도수입 (하천관리과)	69	3,307	208	3,238	·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 기준 편성

-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천사용료’는 세입예산액 18억 11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7억 34백만원으로 7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용도폐지, 유·무상귀속 등으로 행정재산의 하천부지가 감소한 것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하천점용료를 감면¹⁾해준 것에 따른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액 8억 1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31억 28백만원으로 23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대동천 익수사고 민사소송²⁾ 최종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16억 4백만원을 회수한 것과 청계천 대행사업비 정산잔액 3억 87백만원, 양평1빛물펌프장 주민친화시설 용역 정산잔액 2억 56백만원 등을 징수함에 따른 것임.

1) 코로나19 대응 2021년 하천점용료 감면 시행 협조(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625호, 2021.4.26.)
 - 감면대상 : 하천점용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 민간사업자
 - 감면내용 : 하천점용료 25%(3개월분) 감면

2) 2012.7.19.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백련사 입구 지방하천인 대동천에서 여자아이가 물놀이 중 보에 설치된 수문에 발이 끼어 익수사고를 당하여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잃은 사고.
 - 당사자 : 원고-박○○외 3명, 피고-서울특별시외 1명
 - 판결선고 : 일부패소, 배상금 24억 지급

- 다음으로, 하천관리과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예산액 6천 9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33억 7백만원으로 32억 38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징수결정액이 이월된 체납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상하는 것에 반해 예산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액(징수율 2~3%)을 기준으로 추계함에 따라 매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과다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임.
- 따라서,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예산 편성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 의지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방안 강구를 통해 예산액의 추계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매년 이월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을 배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표 2] 최근 3년간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차이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b)-(a)
2021	68	3,306	3,238
2020	73	3,343	3,270
2019	78	3,336	3,258

다) 미수납액 (결산서 p.21~30)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30억 86백만원이며,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 30억 86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차년도 이월액	30억 86백만원
- 하천사용료	3천 3백만원
- 변상금	8천 7백만원
- 과태료	2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29억 63백만원
- 기타(시도비 보조금반환, 이자수입 등)	1백만원

- 이 중 ‘지난년도수입(소송비용 과년도 체납액 등)’이 29억 63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되는 소송비용 등의 고질적 장기 체납에 따른 것으로,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33억 6백만원 중 실제수납은 6.3%인 2억 7백만원 수준임을 감안 할 때 초기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징수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므로 초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담당자가 고질적 장기 체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적 징수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인센티브 부여 등)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다음 [표 3]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태만(27억 40백만원)”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고 체납 사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만큼 고질적 체납에 대한 체납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아울러 초기체납을 가급적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표 3]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차년도 이월액)		3,085,926
	무재산	131,645
	행방불명	74,528
	납세태만	2,739,898
	소송계류	33,165
	국외이주	1,618
	기타	104,699
	납기미도래	373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1	108,301	21,752	6,776	768 (-768)	20 (-20)	316 (-316)	136,829	113,931	16,696	2,553	14,143	45	6,157 (4.5%)
2020	109,577	17,158	2,840	253 (-253)	-	311	129,576	101,558	21,752	9,708	12,044	109	6,157 (4.8%)
2019	116,869	19,800	-	80 (-80)	-	323	136,668	108,934	17,158	8,520	8,638	545	10,031 (7.3%)

가) 개 요

- 예산액 1,083억 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7억 52백만원, 예비비 사용 67억 7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68억 29백만원으로, 이 중 83.3%인 1,139억 31백만원은 지출하고 12.2%인 166억 9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3%인 4천 5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61억 5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9~62)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61억 57백만원이며, 불용율 30% 이상(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등 9건([표 4] 참고)에 해당함.

[표 4]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물순환정책과	한강 수질관리 및 자연성회복을 위한 수중보 운영개선	400	-	400	100.0%
2	물순환정책과	취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605	193	412	68.1%
3	하천관리과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6,562	5,092	462	7.0%
4	하천관리과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442	-	442	100.0%
5	하천관리과	도림천(영등포구) 문래나들목 설치	1,000	-	1,000	100.0%
6	하천관리과	우이천(강북구) 쌍한교 재설치 공사	707	-	707	100.0%
7	하천관리과	창릉천(은평구)자전거도로 신설 및 하천정비 용역	400	95	182	45.6%
8	하천관리과	하천 편입토지 보상	4,807	4,459	348	7.2%
9	하천관리과	하천사용료징수포상금	3	2	1	31.4%

- 먼저, ‘한강 수질관리 및 자연성회복을 위한 수중보 운영개선’ 사업은 신곡수중보의 가동보 운영개선 전 수상시설물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측량 및 조사를 통해 사업물량과 사업비 등을 산출하는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4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본 사업은 지난 ‘20.6월 부분개방 총 사업비 158억 95백만원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관련 기관 협의 및 관련 규정 정비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됨에 따라 본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투자심사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신곡수중보의 관할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부




분개방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에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고, 중앙정부 주도의 이해관계자(국토부, 환경부, 고양시, 김포시,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어민, 농민 등) 협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나 해당부처인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신곡수중보의 관할 주체가 국토교통부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보다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겨지며,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다소 성급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사료됨.
 - 따라서, 감추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더라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으며,
 - 이처럼 사업 추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많은 경우 이행가능성과 이행시기 등을 가급적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취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은 강우시 발생하는 고농도 CSOs를 저류하였다가 강우 종료 후 하수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저류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6억 5백만원 중 68.1%인 4억 1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본 사업은 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 공사기간 2년 4개월, 총사업

비 330억 5천만원, 비용편익비(B/C Ratio)가 1.63으로 평가되었으나,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복개유수지를 일부철거에서 전면철거로 변경하는 등의 사유([표 5] 참고)로 당초 기본계획 대비 공사기간이 7년 8개월 늘어난 10년으로, 총사업비는 48억 65백만원이 증가한 8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 비용편익비가 0.73으로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대두됨. 이에 '21.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타절³⁾하기로 결정하면서 집행잔액 4억 12백만원이 발생한 것임.

[표 5] 기본계획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배치			
	- 용량 47,000m ³ (일괄시공) · 복개유수지 일부철거 · 암굴착물량 미고려	- 용량 40,000m ³ (2단계시공) · 복개유수지 일부철거 · 암굴착물량 고려	- 용량 35,000m ³ (2단계시공) · 복개유수지 전면철거 · 암굴착물량 및 실공기 산출
사업비	33,050백만원	66,570백만원 (기본계획 대비 201% 증)	81,695백만원 (기본계획 대비 247% 증)
	- 주요 공사비 산출	- 주요 공사비 증가사유	- 주요 공사비 증가사유
	· 터파기 및 운반(23억원) · 암굴착 미적용	· 터파기 및 운반(133억원) · 암굴착량 깨기 및 운반비 과다 발생	· 터파기 및 운반(106억원) · 기본설계 대비 암굴착량 감소
	· 복개유수지 일부철거 및 복구 (33억원) · 깨기단가 적용	· 복개유수지 일부철거 및 복구 (120억원) · 정온시설을 고려한 절단 및 파쇄적용	· 복개유수지 전면철거 및 복구 (264억원) · 파일기초 및 유수지 전면공 사필요
· 가시설 비용(16억원)	· 가시설 비용(94억원) · 암 및 단계별 시공물량 증가	· 가시설 비용(84억원) · 가시설 굴착깊이 축소 등	

3) 「회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실시설계 관련 현안사항 검토 보고 (물순환정책과-17382, 2021.10.1.)

구분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급자재비 및 지장물 이전비 (90억원) 일부간섭구간만 재건축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급자재비 및 지장물 이전비 (103억원) 전면철거 및 복구로 비용 증가
공사 기간	2.4년	4년	10년
	6개소 동일 공사 기간 적용 (양평1, 응봉, 휘경, 신도림, 잠실, 탄천)	양평유수지와 같은 공사기간 반영	비작업일수, 수방기간고려, 압 굴착량 등을 고려한 공사 기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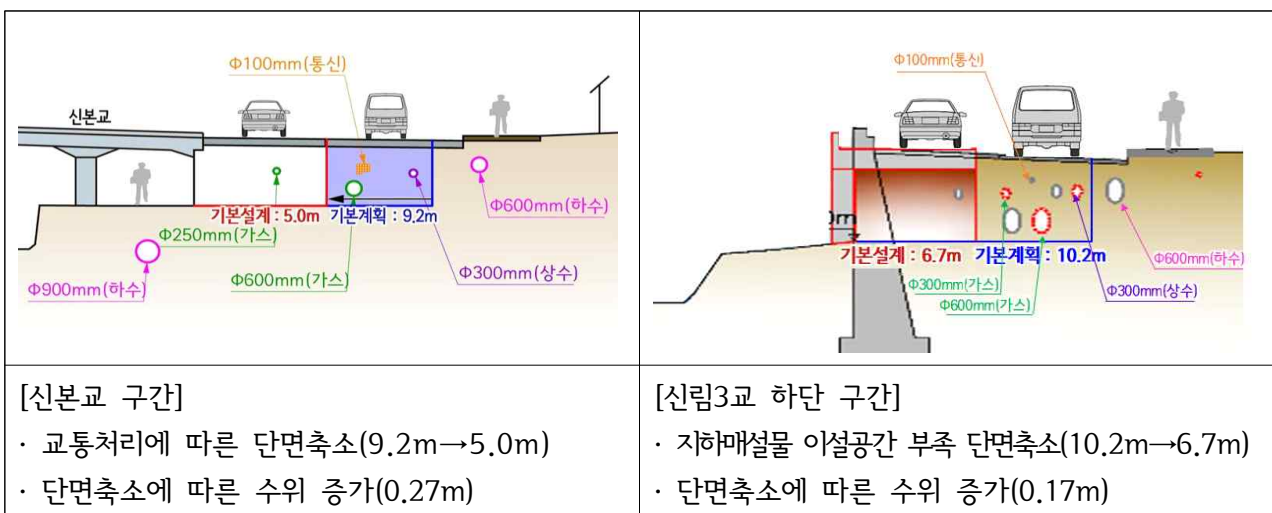
- 동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어오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하천 생태계 보전 및 수질관리에 차질이 생기는 한편, 기 집행된 예산 10억 3백만원(기본설계비 8억 1천만원, 실시설계비 8천 8백만원, 감리비 1억 5백만원)이 매몰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 이는 최초 수립한 기본계획이 부실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된 전형적인 사례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임.
-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은 홍수피해가 빈번한 구간에 대한 단면확장을 실시하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18년~‘21년)으로, 예산현액 4억 42백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18년 사업계획 시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는 안양천 권역 하천기본계획⁴⁾에 근거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9. 4월 사업추진에 따른 지장물 이설 협의결과 사업비가 당초 산출했던 금액보다 2배가량 증가(공사비: 370억원→776억원)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대안검토 및 단계별 대책수립에 상당기간이 소요(‘19.1~12월)됨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99%)을 ‘20년으로 이월했던 사업임.

4)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5호)

- 그러나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20. 7월 사업계획을 '단계별 배수개선대책 수립⁵⁾'으로 변경([표 6] 참고)하여 추진하면서 용역비가 축소(13억 5천만원→7억 25백만원)되어 집행잔액(4억 42백만원)을 '21년으로 이월하였으나,
- '21년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도 당해 예산을 소진할 만큼의 사업진행이 진척되지 않아 금회 이월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임.

[표 6]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계획 변경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비 : (당초)1,350백만원 → (최종)725백만원(감 625백만원) - 불용액 : 442백만원('20년 이월예산) <p>(당초) 도림천 우안 단면확장 1.6km(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예산확보, 사업기간 등을 고려한 단계별 배수개선 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대책 : 낙차공 정비, 교량 2개소 재가설 등(기본 및 실시설계) · 중기대책 : 둔치정비, 저수로 굴착(기본설계) · 장기대책 : 도림천 우안 단면확장 1.6km(기본설계)
--



[그림 1] 도림천 지하매설물 이설, 교통처리 등에 따른 단면확장 폭 감소 현황

5) 도림천 단면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하천관리과-15139)

- 동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이월 사례는 사업계획 시 지장물 조사 및 이설과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며,
 - 금회 예산현액이 전액 불용된 것 역시 예산이월 시 차년도 사업 진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도림천(영등포구) 문래나들목 설치’ 사업은 도림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원 전액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나들목 설치공사를 위해 ‘20. 6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시, 육갑문형식의 나들목 설치는 도림천의 특성상 강우시 시민 대피시간 부족 및 침수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예산액 10억원을 차년인 ‘21년으로 명시이월하면서 대안을 재검토했던 사업으로,
 - ‘21. 6월 사업시행 주체인 영등포구가 대안인 차수벽 및 보행육교 형식을 재검토한 결과, 경제성·시공성·현장여건 등의 어려움([표 7] 참고)으로 인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⁶⁾한바,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6) 「도림천 문래나들목 설치공사」추진계획 변경보고(영등포구 안전교통국 치수과-10702. 2021.06.23.)

[표 7] 차수벽 및 보행육교 재검토 내용

구 분	검토1안 (차수벽)	검토2안 (보행육교+경사로)
검토내용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벽상단 높이 8.0m, 경사로 연장이 224 m로 보행자 및 자전거 이동동선 증가뿐만 아니라 옹벽높이에 따른 <u>이용자의 위압감 발생</u> • 도림천 내로 대규모 구조물 및 경사로 설치로 <u>미관저해</u> • 도림천내 대규모 옹벽(H=8.0m, L=112 m)구조물 설치로 <u>하천 단면 축소</u> • 기존구조물보강 및 가시설설치로 <u>공사기간 증가</u> • 동절기 <u>지속적인 유지관리(경사로) 필요</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육교 높이 11.7m, E/V 높이 16.7 m, 및 경사로가 194m로 <u>보행자 및 자전거 이동동선 증가</u> • E/V 설치공간 확보 어려움 • 보도육교 높이가 높아 <u>이용자의 위험요인 증가</u> • 도림천 내로 경사로 및 계단설치로 <u>미관저해</u> • 도림천 내 대규모 경사로 설치로 <u>하천단면 축소</u> • 동절기 <u>지속적인 유지관리(경사로) 필요</u>
직접공사비 (추정)	37.2억	27.8억

- 이는 사업을 당초 계획함에 있어 구조물 설치에 따른 주변 환경변화와 안전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해 전액 불용이라는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데, 향후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구조물 설치에 따른 지형·지물 변화와 그에 따른 안전성 등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우이천(강북구) 쌍한교 재설치 공사’는 치수적 안전성이 부족한 쌍한교를 재설치하여 집중호우 발생시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백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18.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쌍한교 범람위기로 인해 시급성이 대두되어 긴급히 추진한 사업으로, 교량을 재설치하여 교량규모의 확대(폭8m연장57m → 폭12m연장63.6m) 및 교량위

치의 변경([그림 2] 참고)을 통해 시민안전을 도모하려고 한 사업이었으나,



[그림 2] 도봉구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계획

- 교량 위치의 변경과 교통운영체계변경에 대해 도봉구의회 및 지역주민의 민원(2020년 11월)⁷⁾으로 '20. 12월 공사가 중지되어 '20년도 편성예산을 '21년으로 이월시킨 후 도봉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간접비 증가⁸⁾가 부담되어 '21. 12월 사업을 타절준공 한 것임.
- 당해사업의 예산현액 7억 7백만원은 전액 전년도 이월액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당해연도

7) 도봉구 안○○ 외 1,634명 (민원내용)

- ▲ 쌍한교 재설치 공사는 현재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추진할 것
- ▲ 현재의 쌍한교 교통체계를 필히 유지할 것
- ▲ 쌍한교 재설치 공사 시 사선 교량으로 하지 말 것
- ▲ 교량체계 변경 시 도봉로(의정부 방면)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됨을 명심할 것
- 시사프리신문 “도봉구-강북구 ‘쌍한교 사선교량 재설치 두고 마찰” (2021. 02. 03)

8) 공사중지 후 60일 이후부터 약 94,437월/일 이자 지급

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 또 다시 전액 불용하였는 바, 해당예산이 2년간이나 사용되지 못하고 수면상태에 빠져있는 비효율성을 낳았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해당 사업은 지난해 결산시에도 지적받았던 사업으로 시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했어야 할 사업임에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가 취소되는 사태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3억 7백만원에 이르는 매몰비용([표 8] 참고) 또한 유발시킨바,

[표 8] ‘우이천(강북구) 쌍한교 재설치 공사’ 연차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시비	예산현액	본예산	이월예산액	지출액	예산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2018년도							
2019년도	700,000	700,000		181,510	400,000	102,430	16,060
2020년도	832,430	330,000	502,430	125,420		707,010	
2021년도	707,010		707,010				
합 계				306,930			

-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했어야 할 주민민원 및 해당 자치구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가 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임.
 - 또한, 당초 사업목적이 집중호우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만큼, 미 설치시 시민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창릉천(은평구)자전거도로 신설 및 하천정비 용역’은 창릉천 상류구간의 자전거도로 신설 민원을 해소하고 하천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4억원 중 45.6%인 1억 8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21. 6월에 용역명을 '창릉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9)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사유는 창릉천은 둔치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하천시설 조성 및 자전거도로 설치가 현상대로는 불가함에 따라 둔치 조성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도 및 둔치 조성을 위한 하천 생태환경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대두되어 용역범위를 확대해야 했기 때문임.



[그림 3] 창릉천 자전거도로 연결 계획도

- 이에 예산총액 4억원 중 해당 용역추진을 위한 계약액 2억 1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2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동 사업과 같이 의회 예산 승인 당시의 용역명과 용역범위가 사업추진과정에서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추정이나 차년도 예산을 통해 의회 심의를 다시 득한 후 집행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할 것인바, 향후 유

9) 「창릉천 하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계획(은평구 치수과-8506 2021.06.25.)

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사업계획과 범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결산서 p.71)

- 예산 전용은 1건에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사업의 저류조 유입수문 누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설계비를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음.

[표 9] 예산 전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전용 일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깨끗한 물관리 (물순환정책과)	물환경 개선 및 관리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공공운영비 (201-02)	76,000	-	△20,000	0	21.8.20
			시설비 (401-01)	242,000	20,000	-	501.660	

- 이는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중 유입수문 누수 발생으로 저류조 내 하수가 유입되면서 하수 체류에 의한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여 유수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대두된 바,
- 수문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차년도 수방기간('22.5.15.~10.15.) 전 유입수문 이중화(유입수문 추가 설치) 공사를 준공코자 미리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임.

- 사안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사업비 의회 승인 당시 유입수문 이중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 추정 등을 통해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어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라) 예산이체¹⁰⁾(결산서 p.75)

- 예산이체는 3건에 3억 1천 6백만원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020.11.1. 시행)에 따른 2021.2.2.일자 물순환안전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2021회계연도 기정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10] 예산 이체 현황(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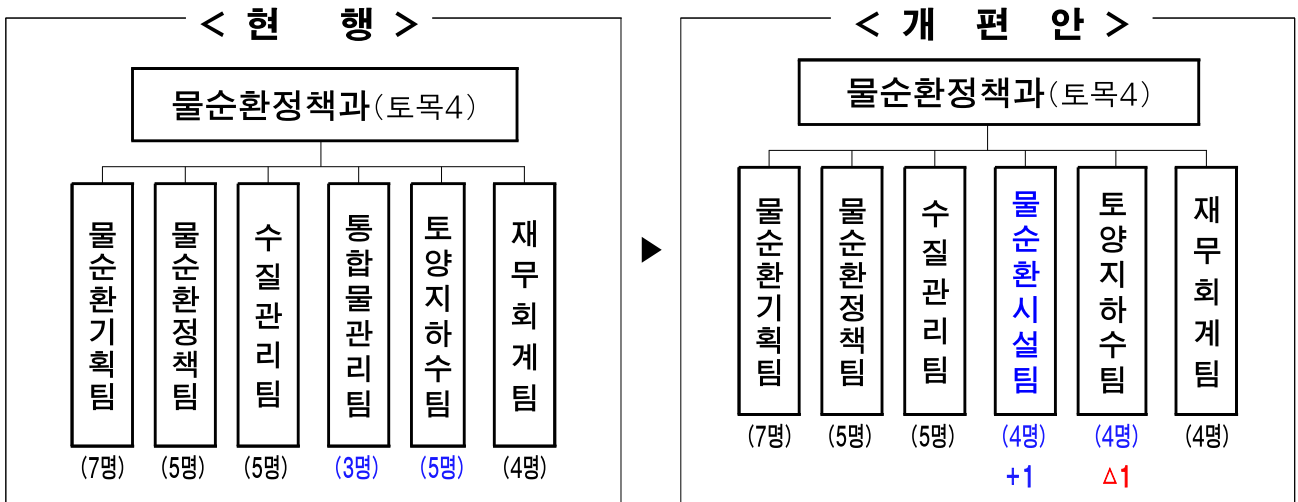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합 계	3건		316	316	316	
물재생계획과	수질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	5	5	-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순환정책과	수질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	-	-	5	시행규칙(2020.11.1.시행)
물재생계획과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	22	22	-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순환정책과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	-	-	22	시행규칙(2020.11.1.시행)
물재생계획과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289	289	-	행정기구 설치조례
물순환정책과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	-	289	시행규칙(2020.11.1.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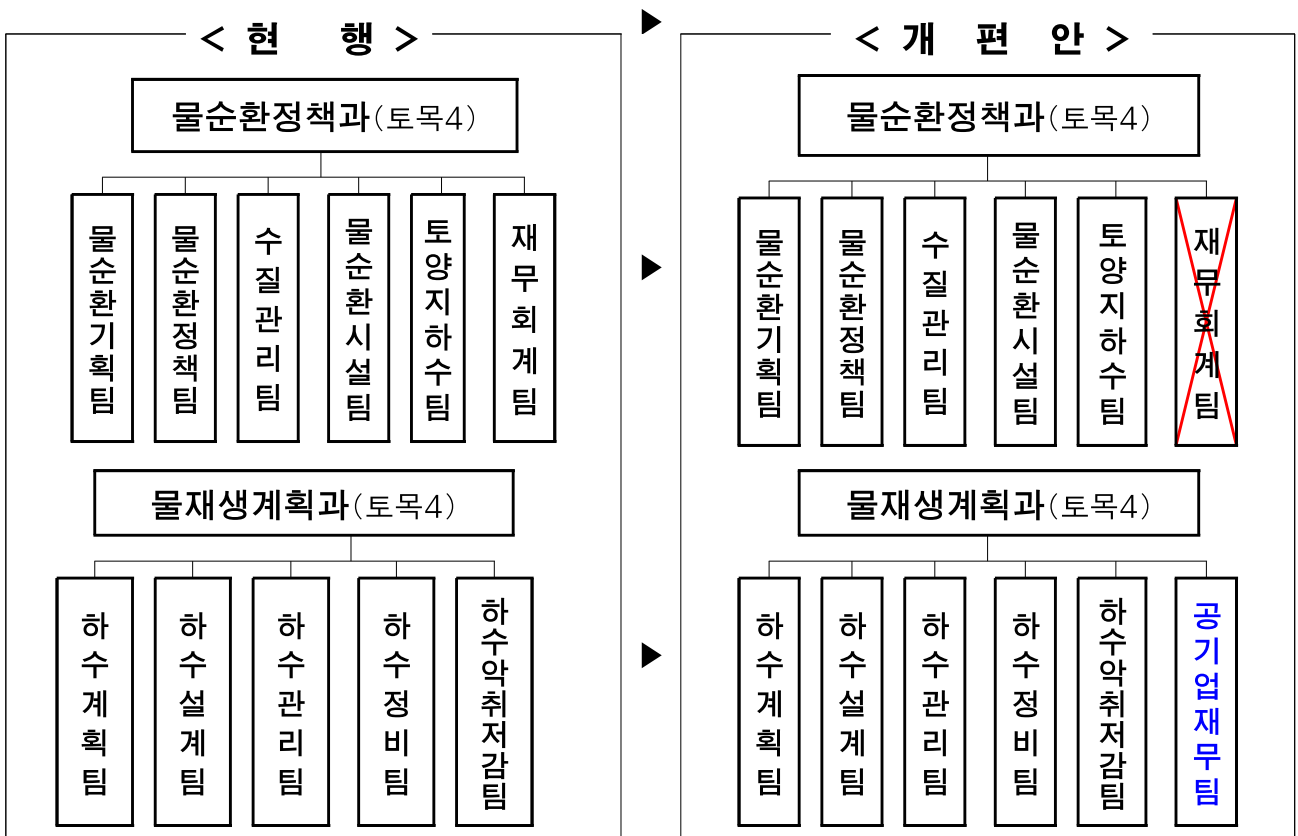
- 참고로, 미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대응을 위해 물순환정책과 통합물관리팀은 물순환시설팀으로 명칭을 변경([그림 4] 참조)

10)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하였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경영평가 등의 업무를 유기적·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물순환정책과의 재무회계팀을 폐지하고 물재생계획과 공기업재무팀으로 이관 ([그림 5] 참조)하였음(물순환정책과-2359호, 2021.2.2.).



[그림 4] 물순환정책과 조직 및 정원 조정



[그림 5] 물순환안전국 조직 조정

마) 예산변경 11)(결산서 p.79)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5건에 7억 68백만원으로 이 중 ‘국가하천 유지보수’,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전농천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 개선’ 3건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음.

[표 11] 예산 변경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5건			18,473	768	768		
물순환 정책과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56	3	-	2021-10-12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증가 및 예산 부족으 로 공공운영비에서 변 경 사용
	빗물관리시설 확충	204-03 특정업무경비	34	-	3		
하천관 리과	노후 수문 (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401-01 시설비	1,404	65	-	2021-10-7	집행잔액(낙찰차액)활 용한 노후 배수설비 개량 추진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401-01 시설비	6,497	-	65		
하천관 리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582	395	-	2021-4-19	‘잠실수중보 보수보강 공사’ 관련 예산부족 으로 당초 미편성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변경사용 *전액 국비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401-02 감리비	-	-	395		
하천관 리과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3,724	197	-	2021-11-26	당초 감리비 예산이 부족 편성(3~9월, 4차 계약분)되어, 추가 소 요 감리비를 시설비에 서 변경하여 사용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401-02 감리비	276	-	197		
하천관 리과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4,700	108	-	2021-11-30	추경(‘21.6.)으로 확보 한 시설비(9억원)에 대 한 감리비 부족분 변 경사용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사업	401-02 감리비	200	-	108		

11)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먼저, ‘빗물관리시설 확충’의 경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으로 전년대비 현원이 증가(당초 57명 → 2021.10월 63명)함에 따라 물순환정책과 5급 이하 직원의 대민활동비가 부족하게 되어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공공운영비 5천 6백만원 중 4백만원을 ‘빗물관리시설 확충’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의 경우 시설비 66백만원을 같은 단위사업인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이는 동 사업의 예산배정 후 자치구별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 차액이 1억 38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표 12] 참고)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낙찰 차액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표 12]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예산 집행잔액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재배정 자치구	‘21. 자치구 편성액	‘21. 12. 집행예정액	집행잔액 예상
수방 대책사업	노후 수문(권양기, 레크바 등) 개량	강동구	70,389	69,544	845
		영등포구	747,042	665,326	81,719
		마포구	191,000	147,420	43,580
		용산구	117,000	104,597	12,403
총 계			1,125,431	986,887	138,547

-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의 집행잔액 1억 72백만원에 본 사업의 낙찰차액에서 융통한 6천 6백만원을 더하여 자치구별 세세부 사업인 ‘사근 모터펌프 분해점검’의 추가 계획분 5건에 2억 38백만원을 활용한 것임.
- 예산의 적극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의회 예산 승인 당시의 계획 물량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 등을 활용하고, 이와 같은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시행중인 ‘잠실수중보 보수공사’ 시설비 15억 82백만원 중 3억 95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것으로,
 - 동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예산을 물순환안전국에서 편성한 후 한강사업본부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21. 3월 사업 시행부서인 한강사업본부로부터의 예산변경 요청에 따른 것임.

[표 13]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현황

구 분	국 가 하 천 유 지 보 수	비 고
계	4,737백만원	
시설비(401-01)	1,582백만원	
	-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 508백만원	
	- 녹화지 제초,관수 및식재 50백만원 - 기타(미편성) 1,024백만원	
자치단체보조(403-01)	3,155백만원	
	- 성동구 등 9개 자치구 3,155백만원	

- 동 변경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감리비가 미편성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융통하였다는 입장이나, ‘잠실수중보 보수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경우 감리비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이를 간과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바,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당초 예산서 상에 없던 감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집행한 것은 의회의 사전 심사권을 일부 침해한다 할 것이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은 서울대 앞 도림천 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림천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보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비 37억 24백만원 중 1억 97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이는 지속적인 지역민원([표 14] 참고)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어 당초 편성한 감리비 부족에 따라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현장 관리 등을 위해 당해연도 편성된 시설비를 융통한 것으로,

[표 14] 민원 발생내역

일 시	민원요구사항	대응 및 검토내용
2019년 3월 22일	· 대학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외 3인 -도림천 완전 복원 건의	· 반복개에 대한 장기적 검토에 따른 사업 추진임을 설명함
2019년 9월 18일	· 도림천 생태복원 자문회의 10인 -복개구간의 완전 개방 요구	· 자문회의 참석 후 본 사업 추진에 관한 면담 후 이해

일 시	민원요구사항	대응 및 검토내용
	-자전거도로 지상설치	설명
2020년 4월 ~ 2020년 8월	· 이○○ 신부 -반복개 구간의 완전 복원	· 담당자 민원사항 청취 및 설득
2020년 10월 22일	· 도림천 생태복원 자문회의 14명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공사중지(재설계 요청)	· 감리단장, 현장대리인 자문회의 참석 후 해당사업 추진에 관해 설득
2020년 11월 23일	· 열린구청장 면담(차○○목사 외 3인) -공사장 교각 설치협의 요구 -하천둔치 자전거 도로설치 반대 -교통문제 해결 건의	· 민원상담실장, 하천팀장 참석하여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 반영사항 설명 · 교통문제 관악경찰서와의 협의 약속
2020년 11월 30일	· 박○○ 외 77명 -복원구간내 편도 4차로→ 편도 3차로 축소건의 -공사구간내 교량 제거 -하천내 자전거도로 위치 이동 건의	· 교통영향분석 결과 비용발생 사항 설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 약속

- 동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공기의 변동성에 따른 정확한 예산 계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되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정합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사업’은 강우 시 차집관로 하수가 월류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전농천 미복개 구간에 대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시설비로 편성된 47억원 중 1억 8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임.
- 동 사업은 당초 ‘21년 9월 1차 공사 완료 후 나머지 공정은 ‘22년 2차 시행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1.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9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2차 공사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 1억 8백만원을 시설비에서 융통한 것임.
-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당연히 포함 했어야 함에

도 이를 간과함에 따른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였는바, 예산 편성시 연계된 비목의 편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바) 예비비 (결산서 p.85)

- 예비비 사용은 1건에 67억 76백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15] 예비비 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실·국·과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처리일자	사유
합계		6,776	6,759	7		
하천관리과	무상양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776	6,759	7	2021. 12. 20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 금회 예비비 지출은 SH공사가 '20. 12월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청구소송¹²⁾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판결금(가집행금) 67억 76백만원을 지출한 것임.
- 동 예비비 지출은 서울시가 소송에서 패소('21.12.1. 서울시 1심패소)¹³⁾하고 항소제기를 결정함에 따라 판결금 이자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금 및 이자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현재 소송은 '22. 3월 2심에서도 기각되어 4월에 상고한 상황임.

12) SH공사는 '15. 6월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수서동 17필지에 대해 서울시와 유상귀속여부를 협의하여 54억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SH공사가 대상 토지는 SH공사로 무상귀속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20. 12월 매매대금 및 이자 67억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

1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1256 부당이득금
당사자 : 원고-서울주택도시공사, 피고-서울특별시
사건토지 : 수서동 501-6외 16필지
판결선고 : 패소, 판결금 금 67억 76백만원 지급(원금 5,403백만원+이자 1,373백만원)

- 이는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 등의 과거 기록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유·무상귀속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실제로 하천, 구거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례와 같이 불필요한 소송 등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임.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39~41, p.195~197)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141억 43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368억 29백만원 대비 10.3%에 해당함.
- 사유별 현황([표 16] 참고)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5건에 42억 83백만원, 사업계획변경 3건에 11억 62백만원, 준공기한 미도래 14건 48억 21백만원, 사전절차 지연 및 기타 6건 38억 77백만원 등 총 28건(141억 43백만원)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표 16]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21	
	건수	이월액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5	4,283
사업계획변경	3	1,162
준공기한 미도래	14	4,821
사전절차 및 기타	6	3,877
계	28	14,143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 17]과 같음.

[표 17]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3건			10,681	7,801	277	73.0%	
1	물순환 정책과	CSOs 저류조(2개소) 설치 기본계획 수립	348	158	9	45.5%	강우조사 여건 부족으로 유량 및 수질조사가 지연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을 위한 과업기간 연장('21.3.~'22.5.)
2	물순환 정책과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용역	524	200	0	38.2%	장기계속용역 2차수 용역준공기한('21.7~'22.6.) 미도래
3	물순환 정책과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4,190	3,814	59	91.0%	'20.11월 공사착공 후 인허가 절차이행, 설계도서 검토, 추가과업 등에 대한 보완설계 시행에 따라 '21.4.20. 이후 공사중지 되었으며 유수지 상부 복개 민원 수용에 따라 추가설계 필요 등 '24. 상반기 이후로 공사시기 조정
4	물순환 정책과	한강 수질관리 종합대책 수립	705	265	0	37.6%	장기계속용역(20.9~22.9. 3차수) 사업으로 2차수 계약분(530백만원, 21.6.~22.7.) 준공기한 미도래
5	물순환 정책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개선 용역	526	157	1	29.9%	과업기간이 총 15개월(21.5.26.~22.8.25.) 로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6	하천관 리과	하천 홍수주의보 등 발령기준 산정 용역	361	206	18	57.1%	과업기간이 총 18개월('21.5.~'22.11.)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7	하천관 리과	성내천(송파구)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공사	1,000	956	0	95.6%	물놀이장 설계용역 중 자문회의 의견 검토 등으로 용역기간이 5개월 연기(당초 '21.6월 준공, 변경 '21.11. 준공) 되어 '21.12월 시설공사를 발주함에 따라 이월처리
8	하천관 리과	유수지 악취저감 용역	412	280	0	68.0%	장기계속용역으로 2차 용역 '22.7.20. 준공 예정으로 용역 기간 미도래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9	하천관리과	정릉천(성북구) 상류 하천환경 정비사업	950	457	7	48.1%	21.6.추경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21.8.31.) 우기철 하천공사 중지여 따라 '21.10월 착공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10	하천관리과	증랑천 생태환경 개선 및 준설방안 마련을 위한 하상분석 용역	265	185	1	69.6%	환경부 "증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종합계획"과 연계되어 시행하는 용역으로 과업물량 증가 및 연계용역 지연으로 용역준공기한 연기 ('22.06.30)
11	하천관리과	창릉천(은평구)자전거도로 신설 및 하천정비 용역	400	123	182	30.7%	유관기관협의 지연으로, 21년 10월 착수한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12	하천관리과	하천 환경개선 방안 수립	200	200	0	100.0%	'21년도 추경예산 사업으로 2회 유찰 되어 12.23. 수의계약 되어 집행시기 미도래
13	하천관리과	홍제천(마포구)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	800	800	0	100.0%	설계용역을 '21.5. 착수하였으나, 지장물 이설 관련 협의 및 디자인심의 등 절차 이행을 위하여 준공기한('21.10.17. → '21.12.20.)을 연기함에 따라 공사비('21.12. 계약) 사고 이월

○ ‘CSOs 저류조(2개소) 설치 기본계획 수립’은 독섬 및 대치유수지에 CSOs 저류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3억 48백만원 중 45.5%인 1억 58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본 사업은 '21.3월 용역 계약을 하고 2021.6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후 강우조사 요건¹⁴⁾ 미충족으로 유량 및 수질조사가 2021.9.~10월에 실시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을 위해 준공기한을 당초 2021.12.31일에서 2022.5.31일로 변경하였고,

14) ※ 강우시 조사 요건 : 선행 건기 3일(72시간) 이상, 강우량 10mm 이상 시 조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 기준(환경부, '20.10.))

- 이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1년 사업 3억 48백만원 중 1억 81백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여용역비 1억 58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이는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 기준(환경부, '20.10.)」에 따른 강우조사 요건이 미충족하여 유량 및 수질조사가 지연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부득이함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동 사업이 2022.5월 탄천처리구역 차집관로 복선화사업 구간과 본 대치 CSOs 저류조 구간 일부가 중첩되어 해당사업의 노선 및 용량 등을 본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준공기한을 2022.5.31.일에서 2022.12.31.일로 재차 연장된바, 타 사업과의 연관성 유무를 파악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CSOs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한 국비 50% 매칭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 9천만원 중 91%인 38억 1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본 사업은 당초 2020회계년도 사업비 41억 9천만원을 2021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면서 2021년에는 본예산 23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5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 ‘20.11월 공사착공 후 인·허가 절차 이행, 설계도서 검토, 설계

오류에 대한 보완설계, 우수지 복개 민원 해소 등을 위한 추가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2021.4.2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였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이월된 예산을 제외한 2021년도 본예산 23억 2천만원 전액을 감추경한 바 있음.

- 이후 추가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¹⁵⁾됨에 따라 계약 및 착수가 지연되어 2021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업비 38억 14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한편, 동 사업은 인근 지역에서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2022.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추진됨에 따라 현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하여 저류조 공사를 추진 시 안전관리 예산이 증가하고 주민 민원발생(소음 및 건물 균열 등) 및 위험시설(옹벽,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¹⁶⁾로 '22.4월 국비 배정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준공 시기를 당초 '22.5월에서 '26.5월로 연장 승인(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1112, 2022.4.12.)을 받았음.
- 따라서,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2022.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과 연계하여 주민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후 '24.10월 이후에나 공사를 재개할 예정에 있음.
- 이처럼 보완설계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 등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

15) 입찰 결과(설계 예산 2억 8천만원) : '21.11.10(무응찰), '21.12.02(무응찰)

16)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시기 조정 검토보고 (물순환정책과-535, 2022.1.10.)

루어지면서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시기가 대폭 연장되는 등 크게 조정됨에 따라 해당 공사관련 계약자의 계약변경이 진행되면서 물가상승 및 재설계로 인해 향후 큰 틀의 사업예산 증가 소지가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 동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시급해 보이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겨짐.



[그림 6]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및 응봉유수지 현황



[그림 기] 유수지 석축 및 노후빌라 현황

- ‘성내천(송파구)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공사’는 노후된 성내천의 물놀이장을 정비하고 부대시설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예산 현액 10억원 중 95.6%인 9억 56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송파구가 ‘21. 3월 용역을 착수했으나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21.5월~8월)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사발주(‘21. 12월 공사계약)가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 공사 추진과정에서 송파구 계획과 주민의견이 서로 달라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당초 송파구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여기지는바,
- 사업의 계획수립 및 설계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예산의 과다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동 사업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에 상당 시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소진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그림 8] 성내천 물놀이장 노후 현황

- ‘유수지 악취저감 용역’은 유수지내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저감대책 수립 및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4억 12백만원 중 68%인 2억 8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0. 9월 착수하여 전회에 이어 금회에도 예산이 이월된 사업으로, 전회 사업추진시 용역 참가업체가 없어 사업 계획을 장기계속용역으로 변경하면서 1차분 용역이 ‘21. 9월에야 준공되었고, 2차분 용역 역시 ‘21. 9월 계약되어 준공예정 기간(‘22. 7월)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이처럼 장기계속용역으로 인해 용역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차수별 용역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동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정릉천(성북구) 상류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정릉천 상류의 하천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환경정비 요구에 따른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5천만원 중 48.1% 4억 57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1. 6월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같은 해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우기철 하천공사 중지로 '21. 10월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예산을 사고이월 한 것임.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예산집행 가용일수가 많지 않은 제약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동 사업과 같이 우기철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업 등은 가급적 추경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편성되는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그림 9] 정릉천 상류부 하천 현황

- ‘하천 환경개선 방안 수립’ 사업은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과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억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음.
- 사고이월 사유는 동 사업역시 '21.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같은 해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

한 후 10월 용역 발주를 의뢰하였으나, 입찰이 2회 유찰되어 '21. 12. 23일 수의계약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용역비 전액을 사고이월 한 것임.

○ '홍제천(마포구)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은 망원동 지역주민들의 홍제천 이용과 한강공원, 월드컵공원 및 하늘공원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8억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홍제천과 주변 주택가를 가로막고 있는 제방에 나들목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 실시설계용역을 '21. 5월 착수하였으나 지장물¹⁷⁾ 이설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2개월)과 특정공법심의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준공기한 연기('21.10월→'21.12월)로 공사비를 사고이월 한 것임.

- 이는 설계과정에서 현장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못했음을 방증하는바, 설계과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해야 할 것임.

17) 지장물 이설 및 유관기관 협의내역

·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서부수도사업소) : 와우산배수지 배수관 (D700mm×2열, L=10m)

- 상수관로 이설은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14조에 의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청구, 상수관로 이설 협의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1	13,000	13,000	10,000	10,000	-	-	-	-	100.0
2020	11,000	11,000	11,000	11,000	-	-	-	-	100.0
2019	25,796	25,796	25,000	25,000	-	-	-	-	100.0

가) 개요

- 예산현액 130억원 대비 76.9%인 10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액 지방채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1	56,876	5,389	-	135 (-135)	-	-	62,265	51,925	9,549	2,500	7,049	-	791 (1.3%)
2020	57,247	12,417	-	350 (-350)	-	-	69,664	59,332	5,389	-	5,389	-	4,943 (7.1%)
2019	81,479	20,697	-	775 (-775)	-	-	102,176	83,208	12,417	1,410	11,007	83	6,469 (6.3%)

가) 개요

- 예산액 568억 7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3억 89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22억 65백만원으로, 이 중 83.4%인 519억 25백만원은

지출하고 15.3%인 95억 4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7억 9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9~60)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22억 65백만원 대비 1.3%인 7억 91백만원이며, 불용률 30%(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1건임.

[표 18]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하천관리과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7,412	5,511	451	6.1%

-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은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능력 확대를 위해 사당천 단면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74억 12백만원 중 6.1%인 4억 5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불용은 낙찰차액 1백만원과 지출잔액 4억 5천만원인데 지출잔액 발생사유는, 사업 시행 주체인 서초구가 본 공사의 감리용역을 ‘서초구 하수도 분야 전문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¹⁸⁾에 포함하여 시행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의 절감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사업방안을 발굴한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예산편성 시점에서 보다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18) 「하수도분야 전문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계획 (서초구 물관리과-915 2020.1.14.)

다)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 사용은 없음.

라)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 19)(결산서 p.80)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3건에 1억 35백만원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서 각각 시설비를 감리비로 78백만원,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 시설부대를 감리비로 7백만원을 융통하여 사용함.

[표 19] 예산 변경사용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3건			20,178	135	135		
하천관리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401-01 시설비	10,240	78	-	2021-12-13	공중별 증가분 발생에 따라 감리비 예산 추가 소요 되어 변경사용
		401-02 감리비	900	-	78		
하천관리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401-01 시설비	6,790	50	-	2021-2-5	사유지 감정평가 손실보상금 결정에 따라 시설부대비 부족분 변경사용
		401-03 시설부대비	610	-	50		
하천관리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401-03 시설부대비	660	7	-	2021-12-13	공중별 증가분 발생에 따라 감리비 예산 추가 소요 되어 변경사용
		401-02 감리비	978	-	7		

19)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 금회 3건의 예산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우선 ‘21. 2. 5일 시설비 5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것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던 가톨릭성모병원 장례식장의 주차장 일부에 대한 손실보상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표 21] 참고)함에 따른 부족분을 융통한 것이고,

[표 20] 보상내역 (서초구 반포동 123-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보상구분	종 류	면적(㎡)	기 보상내역		추가 보상기간
			보상금액(원)	보상기간	
토 지 일시사용	장례식장 주차장	600.0	707,434,660	17.6개월 (‘19.8.12~ ‘21.1.30)	14개월 (‘21.01.31.~ ‘22.03.31.)
영업권 일시사용	장례식장 주차장(26면중 11명)	영업권	26,701,000		

[표 21] 감정평가 결과 (서초구 반포동 123-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단위 : 원)

구분		감정평가법인별 금액	(주)세움	(주)정도	(주)미래새한
총계		637,509,460			
손실보 상금	합계 (보상금결정액)	616,699,660	601,393,000	608,393,000	640,313,000
	토 지(일시사용)	596,866,660	581,560,000	588,560,000	620,480,000
	영업권(일시사용)	19,833,000	19,833,000	19,833,000	19,833,000
감정평가 수수료		20,809,800	6,794,700	6,872,800	7,142,300

- ‘21. 12. 13일 시설비 78백만원과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것은 연말 감리비 정산시 공종별 증가분이 발생하여 부족분 8천 5백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융통한 것임.

- 앞선 주차장 점유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가는 감정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후인 '21. 2월 마무리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되나,
- '21. 12. 13일 발생한 감리비 증가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의 예산변경은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당해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동 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의 추가 편성 ([표 22] 참고)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표 22]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

(단위 : 원)

회계	실국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추경예산 (A)	기정예산 (B)	증감 (A-B)
도시개발특별회계					11,800,000	8,000,000	3,80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계	11,190,000	7,390,000	3,800,000
				시설비	10,290,000	6,790,000	3,500,000
				감리비	900,000	600,000	300,000
				시설부대비	610,000	610,000	0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97)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10건(통계목별) 70억 49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622억 65백만원 대비 15.3%에 해당됨.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 23]과 같음.

[표 23]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	하천관 리과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400	400	-	100%	교통처리계획 등 복개하천 복원의 면밀한 검토 필요에 따라 기본설계 기간 연장 및 준공기한 미도래(1차 '21.6.1.~ '22.12.31.)
2	하천관 리과	신월빛물저류 조 분석평가 및 사용성 검토 용역	860	418	25	4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 석·평가 용역(신월·신정·화곡), 신월 빛물저류배수시설 모니터링 및 유출지하수 관리계획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3	하천관 리과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583	241	-	41%	'21.10.6.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재심의를 따른 심의 소요기간을 반 영하여 용역기간 4개월 연장 ('21.12.10.→'22.4.10.)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
4	하천관 리과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기술 개발	300	146	9	49%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 추진 등 착수 지연에 따라 용역준공기한 (21.5.27.~22.3.22.) 미도래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은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지
역활성화, 도심 내 휴게공간 제공 등을 위해 녹번천 복개구간을
복원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4억원 전액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1.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6월 1차용역을 착수하였으나 기존자료검토, 지장물조사, 교통
분석 등의 기초조사 수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용역
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1차 용역비 4억원 전액을 사고이월
한 것임.
- 이는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에 검토되었어야 할 기초조사들

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편성 전 사업추진에 따른 기초조사 및 기본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같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신월빛물저류조 분석평가 및 사용성 검토 용역’ 사업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의 확충사업 전·후 재해 저감성을 평가하고, 실제 운영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운영기준의 검증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8억 6천만원 중 49%인 4억 18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표 24] 신월빛물저류조 분석평가 및 사용성 검토 세부 용역내역

용역명	과업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 (신월·신정·화곡)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재해원인, 피해현황) - 수행성과(설계, 시공 등 사업 추진) 평가 - 사업효과(재해저감, 경제성, 주민생활 효과등) 평가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 모니터링 및 유출지하수 처리계획 용역	- 국내 최초로 설치한 지하 대심도 터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물 모니터링으로 운영기준 검증·개선 추진 -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유출지하수 처리 및 활용 방안 마련

- 동 사업은 2건의 세부용역([표 24] 참고)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주민호응도 평가 및 대민접촉 등의 어려움으로 후속절차인 행안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이 지연되어 준공기한이 미도래됨에 따른 것이며,
- 다음으로,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 모니터링 및 유출지하수 처

리계획 용역'은 수방기간(5~10월)으로 인해 현장조사 업무가 불가함에 따라 주요절차인 지하수의 정확한 수질측정이 지연되어 동 용역 또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두 용역 모두 과업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에는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나, 당초 용역과업계획이 사회적 환경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용역계획 수립시 다방면의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사업은 오류천 단면부족으로 인한 통수능을 확보하여 우기철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5억 83백만원 중 41%인 2억 41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안양천권역 기본계획'²⁰⁾에 따라 '24년까지 진행하는 계속사업으로 금회 3단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었으나 서울시 지역수자원 관리위원회 재심에 상당기간('21.6월→10월)이 소요되어 용역준공기한이 차년으로 연기('21. 12월→'22. 4월)됨에 따라 용역비를 사고이월한 것임.

- 여기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지적사항([표 25] 참고)을 살펴보면 인접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 설계시부터 고려되었어야 할 요건들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간과한바,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설계시 필수적인

20)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5호)

검토 사항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표 25]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내역

구분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1	·신설암거 연결구간에서 단면 완화구간 설치	·단면완화구간 설치	반영
2	·오수 차집관로 설치	·우수토실 설치 및 종정부 오수연결관 설치	반영
3	·기존암거 보강시 신설암거와 이격하여 안전확보	·이격설치 및 이격 공간내 완충콘크리트 타설	반영
4	·세굴위험도 분석 및 하상보호공법 수립	·유속 및 소류력에 안전한 호안공법 적용 및 기초근입깊이 확보	반영
5	·수격작용 발생여부 검토	·본 과정구간내 미발생	반영
6	·전체암거 신설 검토	·현지 교통여건 고려시 전체 철거후 신설 어려움	미반영
7	·단면 변화구간은 가하학적으로 잠변하도록 설계	·단면완화 구간 설치	반영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 (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월액	
2021	33,889	33,967	31,940	31,940	-	-	-	-	100.0
2020	39,303	39,555	36,864	36,864	-	-	-	-	100.0
2019	30,827	32,818	34,067	34,067	-	-	-	-	100.0

가) 개요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39억 67백만원으로 319억 4천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19억 4천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나) 세수추계(결산서 p.28-29)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94.2%로 총 19억 49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음.

[표 26]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유
경상적 제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33	79	79	-54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임시적 제외수입					
그 외 수입	0	119	119	119	세입계좌 회계 착오부과로 인한 수납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보조금					
기금	29,853	27,619	27,619	-2,234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상계처리 및 사업계획변경,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부족에 따른 국비 수령액감소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45	1,189	1,189	144	코로나로 인한 사업 축소로 국고보조금 반납액 증가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은 예산액 298억 53백만원 대비 징수 결정액은 22억 34백만원 감소한 276억 19백만원으로, 감소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상계처리 및 사업계획변경,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예산부족에 따른 국비 수령액감소 따른 것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1	33,889	78	-	80 (-80)	160 (-160)	-	33,967	29,951	-	-	-	1,468	2,548 (7.5%)
2020	39,303	252	-	39 (-39)	10 (-10)	-	39,555	32,746	78	-	78	1,189	5,541 (14%)
2019	30,827	1,991	-	-	1 (-1)	-	32,818	29,637	252	95	157	689	2,240 (6.8%)

가) 개 요

- 예산액 338억 89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8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39억 67백만원으로, 이 중 88.2%인 299억 51백만원은 지출하고, 4.3%인 14억 68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25억 4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61~62)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2건으로 예비비는 당해 연도 내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설치)은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 상계 처리로 인한 국비 미교부액 발생에 따른 것임.

[표 27] 불용률 3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1	물순환정책과	예비비	278	-	278	100.0%
2	물순환정책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환경기초시설 설치)	5,739	3,719	2,020	35.2%

- 이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하수암거 내 퇴적물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7억 39백만원 중 35.2%인 20억 2천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20.12월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 57억 39백만원 중 확정내시(‘20.12월) 이후 당해연도에 사업내용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21.2월)하여 국비를 재조정함(‘21.3월)에 따라 2억 18백만원이 미교부된 것과
 - ‘17~‘18회계연도에 발생한 국고보조금 미반납금 12억 4천만원을 국비지원액에 상계처리하고, 2021회계연도 공사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함에 따라 5억 62백만원이 미교부된 것으로,
 - 당초 확정내시액 57억 39백만원 중 실제 미교부된 금액은 2억 18백만원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현금간 이동은 없었으나 회계적 상계처리에 의해 실질적으로 교부된 것과 다름없기에 불용액 20억 2천만원 중 미교부된 2억 18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2백만원은 명목상 불용에 해당함.
 - 참고로, 본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국비를 신청하는 타 국가보조사업과 달리 전년도에 기금의 확정내시가 이루어진 이후 당해연도에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국비를 재조정하여 확정²¹⁾하고 있음.

21) ※ 지원절차 : 확정내시(2020.12)→사업 심사(2021.2)→기금사업 확정(2021.3)

다) 예산전용(결산서 p.71)

- 예산 전용 사용은 1건에 1억 6천만원으로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음([표 28] 참고).

[표 28]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일자	사유
				감액	증액		
1건			1,525	160	160		
물 순환 정책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201-01 사 무관리비	1,525	160	-	2021-03-05	청소선박(서울914호, 915호) 법정 중간검사 수검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예 산 전용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401-01 시 설비	-	-	160		

-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은 2020년도까지 사업부서인 한강사업본부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였으나 한강수계관리위원회²²⁾ 심의를 통해 2021년부터 신규 국비(기금)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사업부서인 한강사업본부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편성부서인 물순환정책과 간에 지출계획 착오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소선 검사비 집행을 위하여 시설비로 구분하여 편성해야 할 것을 시설비 편성을 누락한채 사무관리비로 전액 편성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용한 것임.

2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구성은 위원장(환경부차관) 및 위원(서울특별시부시장, 인천광역시부시장, 경기·강원·충청북도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장,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 이는 세심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은 사례라 할 것인바, 추후 사업부서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예산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 (결산서 p.81)

- 예산의 변경 사용은 2건으로 기금사업관리비의 국외업무여비를 잠실상수원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음.

[표 2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사 유
				감액	증액		
2건			1,852	80	80		
물순환 정책과	기금사업관리비	202-03 국외업무여비	10	10		2021-10-19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외업무수행 불가로 상수원 관리 사무관리비용으로 변경 사용
	잠실상수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47		10		
물순환 정책과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95	70		2021-03-05	청소용 선박 및 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201-02 공공운영비			70		

- 먼저, ‘기금사업관리비’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합동(환경부 및 5개 시·도) 공무 국외여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잔액 1천만원 전액을 상수원관리지역 순찰 및 점검에 필요한 사무비용 등으로 지출하고자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것임.
- 다음으로,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은 앞선 예산 전용 사례와 동일하게 사업부서인 한강사업본부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편성부서인 물순환정책과 간에 지출계획 착오로 예산 전액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것을 청소용 선박 및 차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한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

- 차년도 사고이월은 없음

[붙임 1]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소 관 실 국 (부 서 명)
46	<p>효과적인 사업관리로 예산의 불용발생 지양</p> <p>- 한강 수질관리 및 자연성회복을 위한 수중보 운영개선 사업</p>	<p>해당 사업의 예산액이 전액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오편성하였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만약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감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편성시에도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오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물순환안전국 (물순환장제과)</p>
47	<p>적절한 사업 계획 및 관리로 예산불용 지양</p> <p>-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p>	<p>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또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 시에 사업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임.</p> <p>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 타절 준공됨으로써 당초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예산이 낭비된 결과가 되었음.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임.</p>	<p>물순환안전국 (물순환장제과)</p>
48	<p>민원발생이유로 사업중단에 따른 예산불용 지양</p> <p>- 우이천(강북구) 쌍한교 재설치 공사</p>	<p>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진행에 따른 절차별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특히 해당 지역구와 충분한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함.</p> <p>향후에는 주민들의 반대 등 민원제기가 불가피한 사업추진의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전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p>	<p>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p>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소 관 실 국 (부서명)
49	<p>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p> <p>-도림천(영등포구) 문래나들목 설치 사업</p>	<p>2020년에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렵다고 결정되었다면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운용예산의 감추경 등을 통해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p> <p>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반복은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p>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50	<p>이월 예산의 불용방지를 위한 철저한 이월 검토 필요</p> <p>-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p>	<p>의회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과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본 사고이월까지 모든 이월액이 전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의 이월검토 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짐. 이월사업의 경우 차년도에 집행가능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이월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51	<p>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권고</p> <p>-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p>	<p>2018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 설계검토 및 보완설계로 인해 실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중지가 되었으며 사업 기간 개시시점을 2024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당초 해당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타당성조사나 실시설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p> <p>근본적으로 사업계획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등의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이뤄져서 사업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 또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행위임으로 사업계획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도록 권고드립니다.</p>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장제과)

46. 효과적인 사업관리로 예산의 불용발생 지양

[한강 수질관리 및 자연성회복을 위한 수중보 운영개선 사업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신곡수중보의 가동보 운영개선을 통해 감조하천의 역동성 회복에 따른 한강의 다양한 생태적 경관 회복과 녹조 등 수질관리의 유연성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2021년에 4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의 진행이 전무하여 예산액 전액이 불용 되는 결과가 발생함.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내용을 보면 당해연도에 수상시설물 하부 준설 등 공사비용의 실시설계가 진행하여야 차질없이 2022년에 본공사가 진행되어 마무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한강 수질관리 및 자연성회복을 위한 수중보 운영개선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실시설계용역	400	-	400	100%

□ 사업개요

- 위치 : 한강 신곡수중보(한강 잠실 수중보)
- 근거 : 신곡수중보 가동보 부분 개방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73호, '20.3.25)
- 기간 : 2021.01. ~ 2022.12.
- 내용 : 한강 내 수상시설물 하부준설, 어선 진출입로 준설 등
- 효과 : 신곡수중보 가동보 운영개선을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 복원 확인, 한강(서울시 구간)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 제고 및 소통 계기 마련

나. 시정권고

해당 사업의 예산액이 전액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오편성하였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만약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감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용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 편성시에도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오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7. 적절한 사업계획 및 관리로 예산불용 지양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CSOs)로 인한 오염부하 저감 및 하천수질목표를 달성하고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통한 수생태계 보전과 주민 건강 등의 편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임.

2014년에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2019년에 기본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2020년에 설계건설사업관리 예산이 미확보되면서 용역이 중지되었음. 결국에는 2021년에 공시기간이 장기이고 과도한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사유로 타절준공이 되었음.

하천 생태계 보존 및 수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계획되고 진행되었던 사업이 중단됨으로서 그동안 집행되었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사고어월액	집행액	불용액
2021년	-	605	193	412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326
-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조13항, 제3조, 제4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1항2호
- 기간 : 2014.07 ~ 2021.12(실시설계용역 타절 준공)
- 내용 : CSOs 저류조 및 부대설비(탈취설비, 펌프설비, 세척설비, 계측설비 등) 설치
- 효과 : 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CSOs)로 인한 오염부하 저감 및 하천수질 목표달성 지속적 이행,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계 보전과 주민 건강 등의 편익성 제고

나. 시정권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또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 시에 사업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임.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 타절 준공됨으로써 당초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예산이 낭비된 결과가 되었음.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임.

48. 민원발생이유로 사업중단에 따른 예산불용 지양

[우이천(강북구) 쌍한교 재설치 공사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우이천의 교량의 치수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한교를 철거 및 재설치 하는 사업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사업임에도 2020년에 공사 착공 후 중단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본예산은 전액 감경되었고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전액 불용됨. 중단사유는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계속사업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타절 결정이 되었음.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었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보이며 그에 따라 예산이 불용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됨.

특히 해당 사업은 교량 재설치에 따른 교량의 위치 변경과 교통운영체계의 변경이 따르기에 그에 따른 불편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사전절차의 미비로 인해 하천 범람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추진되지 못하고 중지되었다는 점에서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음.

우이천(강북구) 쌍한교 재설치 공사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	추경	전년도 사고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시설비	1,900	△1,900	707	-	707

□ 사업개요

- 위치 : 강북구 한천로150길 67 ~ 도봉구 우이천로 313
- 근거 : 하천법 제27조
- 기간 : 2018.10. ~ 2022.06.
- 내용 : 쌍한교 철거 및 재설치
- 목적 : 교량 높이가 낮고 교각이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등 치수적 안전성이

결여되어 집중호우 발생 시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을 재설치



우이천(강북구) 쌍한교 위치도

나. 시정권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진행에 따른 절차별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특히 해당 지역구와 충분한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함.

향후에는 주민들의 반대 등 민원제기가 불가피한 사업추진의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전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49.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도림천(영등포구) 문래나들목 설치 사업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영등포 문래동 지역주민의 도림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나들목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고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도록 계획되었으나 2020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21년도로 명시이월되었음.

2020년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육갑문형식 나들목 설치에 대해 심의 검토하였고 심의 결과 경제성, 시공성, 현장여건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본 사업의 계속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림. 따라서 전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 1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본 사업의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충분한 조사 및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무산되는 바람에 2021년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집행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되었음.

최근 2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전년이월	예산	집행액	차년이월	불용액
2020	51	1,000	51	1,000	-
2021	1,000	-	-	-	1,000

□ 사업개요

- 위치 : 경인로 71길 50 인근
- 근거 : 하천법 제3조 및 제27조
- 규모 : 나들목 설치(육갑문 1개소)
- 기간 : 2019.02 ~ 2021.12
- 내용 : 신도림 고가차도 하부에 나들목 및 육관문 설치
- 목적 : 문래동 주민들이 도림천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도림역 또는 신정교 방향으로 1km이상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 개선

○ 효과 : 도림천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도림천 문래나들목 위치도

나. 시정권고

2020년에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로 해당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렵다고 결정되었다면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운용예산의 감추경 등을 통해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반복은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하며, 만약 사업의 미집행이 확정적이라면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다른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50. 이월예산의 불용방지를 위한 철저한 이월검토 필요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도림천 단면확장을 통해 홍수 피해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단면확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 지장물 이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장기화로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2020년에 단기대책(변경안)시행에 따른 설계기간을 반영하여 용역기간이 연장되었고 사업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나 2021년에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전년도로부터 이월받은 사업비가 전액 불용이 되었음.

사업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내 계획된 사업예산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임에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고이월액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황	전년도 명시이월	전년도 사고이월액	집행액	불용액
2021년	-	200	242	-	442

□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림천 일원(승리교~ 동방1교)
- 근거 : 안양천권역 하천정비기본계획
- 기간 : 2018.01 ~ 2023.12
- 내용 : 도림천 통수단면 확장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목적 : 도림천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단면 확장을 통하여 홍수 피해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나. 시정권고

의회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과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본 사고이월까지 모든 이월액이 전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의 이월검토 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짐. 이월사업의 경우 차년도에 집행가능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이월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1.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권고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CSOs 저류조 설치를 통해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계획되었으며 2018년에 기본설계가 진행되었고 2019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2021년에 공사가 중지되었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전년도에 이은 계속적인 이월

해당사업의 최근 4년동안의 사업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불용이 되거나 전년도에 이은 계속적인 이월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0년에 용역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후 4,190백만원에 대해 명시이월이 되었으나 2021년에 공사중지로 차년도로 재이월이 되었음. 이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사업진행의 불확실성

해당사업에 대해 공사구간에 접한 노후 석축과 유수지 인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위험요소로 인하여 주변지역 재건축 시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업시기를 2024년으로 조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변 재건축의 진행여부도 불명확하여 향후 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201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2018년도에 기본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2019년에 실시설계 진행 후 사업 진행이 부진한 상황을 볼 때 기존에 진행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위의 사항들로 보아 차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집행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임.

3)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비 증가

사업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해당 공사관련 계약자의 계약변경이 진행될 것이며 물가상승비 및 재설계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가 예상됨. 당초에 사업

계획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으로 이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진다고 판단됨.

최근 4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전년이월	당초	추경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8	-	280	-	157	112	11
2019	112	1,510	-	166	-	1,456
2020	-	4,202	-	12	4,190	
2021	4,190	2,320	△2,320	317	3,814	59

□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25-98(응봉유수지 내)
-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법정계획, 2009.6.)
- 규모 : CSOs 저류조 4,000㎡
- 기간 : 2018.02 ~ 2022.04(당초)
- 내용 : CSOs 저류조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 목적 : 강우시 발생하는 고농도의 합류식하수관로월류수를 저류하였다가 강우 종료 후 물재생센터로 연계 및 처리하여 하천 오염부하 저감 및 수생태계를 보존하고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



응봉유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위치도

나. 시정권고

2018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 설계검토 및 보완설계로 인해 실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중지가 되었으며 사업기간 개시시점을 2024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당초 해당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타당성조사나 실시설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등의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이뤄져서 사업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 또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행위임으로 사업계획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도록 권고드립니다.